

(별지 제1호 서식)

담당부서		용도세울 전용물품 승인신청(승인)서	처리기간
담당과장			14 일
담당자			
연락처			
수입자	상 호	통 관 고 유 부 호	
	대 표 자	사 업 자 등 록 번 호	
주 소	주 소	전 화 번 호	
	H S 번 호	사 업 의 종 류	
물 품 명 세	품 명	수 입 신 고 번 호	
	모 델 · 규 격 · 상 표 명		
	성 분 · 등 급		
	전 용 용 도		
전용물품이유			
사후관리세관		해당(동일)용도에 사용할 자	
사용(설치)장소		※전용물품 승인시 유의사항	
<p>「관세법」 제83조제1항 단서와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임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○○ 세 관 장 귀하</p>		<p>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임을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 세 관 장 직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하</p>	
<p>* 구비서류 :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청서 1부 2.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3.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(또는 견본품) 등 4.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			수수료
			없 음

※ 유의사항 : ①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 유효기간동안은 상기 물품을 전용확인 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물품확인·용도세울적용 신청 없이도 용도세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기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 ② 사후관리세관에는 해당 물품을 사후관리하는 모든 세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